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국민연금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법」 제1004조의2에 의해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유족연금 등의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가산 이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국민연금 급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급여 환수 시 이자 가산 규정 명확화(안 제42조)

국민연금법 개정(법률 제21203호, '26.1.1. 시행)에 따라 상속권 상실 확정으로 인한 유족연금 등 수급권 제한 시의 환수금 이자 가산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환수사유별로 적용되는 이자율의 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환수금 이자 가산 기준을 정비

나.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안 별표 2의3)

수급자 관리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수도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추가하며, 국민연금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와

관련된 자료', 「수도법」 제3조제23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와 관련된 자료 등을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달부터”를 “달(「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 중 “이자율”을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이자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을 “3년”으로, “이자율”을 “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낮은 이자율”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른 이자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1호에 따른 이자율

나. 상속권 상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수급권 변동 등을 공단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 제2호에 따른 이자율

별표 2의3 제1호버목을 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서. 「수도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별표 2의3 제2호더목 중 “ 「민사소송법」 ”을 “ 「가사소송법」 ”에 따른 상속권 상실 신고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 「민사소송법」 ”으로 하고, 같은 호 누목을 우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누목부터 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누.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와 관련된 자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주택용 전기료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자료

(2) 전기 사용량에 관한 자료

(3) 「전기사업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기공급을 중단(전류제한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한 경
우 그 사유 및 전기공급이 중단된 가구의 현황에 관한 자료

두. 「수도법」 제3조제23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
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보유
하고 있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와 관련된 자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1) 수도 사용량에 관한 자료
- (2) 수도요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자료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수도물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그 공급을 중단한 경우 그 사유 및 수도공급이 거절된
가구의 현황에 관한 자료
 - (가)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
 -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사용자와 관련된 자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1) 도시가스 사용량에 관한 자료
- (2) 도시가스 요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자료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그 공급을 중단한 경우 그 사유 및 도시가스 공급이
거절된 가구의 현황에 관한 자료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무. 「약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자료

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의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자료

수.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의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에 관한 자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수 결정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①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u>달부터</u>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u>이자율</u>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u>1년</u> 만기 정기예금 <u>이자율</u>	제4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자) ① 법 제5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u>달(「민법」 제1004조의 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u> 환수금을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에 의하되,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은 급여에 산입하여 그 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계산 기간에 적용할 이자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3년 만기 정기예금 <u>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 높은 이자율</u>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u>3년</u> 만기 정기예금 <u>이자율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중</u>

<신 설>

낮은 이자율

3. 법 제57조제1항제4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른 이자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제1

호에 따른 이자율

나. 상속권 상실이 확정된 날로

부터 법 제121조제1항에 따

라 30일 이내에 수급권 변

동 등을 공단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

우 : 제2호에 따른 이자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환수 시 가산할 이
자에 관한 적용례) ① 제42조제1
항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민법」 제1
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환
수 결정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규제개정안
별표 2의3(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 1.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 버.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 2.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사고의 수사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	별표 2의3(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 1.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법인·단체 <u>버.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u> <u>서. 「수도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u> <u>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u> <u>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u> <u>처. (현행 “버”와 같음)</u> 2.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더.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신고와 관련된 소송 관련 자료,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사고의 수사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

누. (생략)

<신설>

누. 「한국전력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기사용자와 관련된 자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1) 주택용 전기료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자료
- (2) 전기 사용량에 관한 자료
- (3) 「전기사업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기공급을 중단(전류제한기 설치 등을 포함한다)한 경우 그 사유 및 전기공급이 중단된 가구의 현황에 관한 자료

두. 「수도법」 제3조제23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신 설>

를 위탁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와 관련된 자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1) 수도 사용량에 관한 자료
 - (2) 수도요금 납부 및 체납에 관
한 자료
 -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여 수돗물
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그 공
급을 중단한 경우 그 사유
및 수도공급이 거절된 가구
의 현황에 관한 자료
 - (가) 「수도법」 제38조제1항
에 따른 공급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
 -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 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
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가 보유하고 있는 가스사용

<신 설>

자와 관련된 자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도시가스 사용량에 관한 자료

(2) 도시가스 요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자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그 공급을 중단한 경우 그 사유 및 도시가스 공급이 거절된 가구의 현황에 관한 자료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유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
무. 「약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같은 법 제23조의3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

<신 설>	축·운영에 관한 자료 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의 납부 및 채납에 관한 자료
<신 설>	수.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의 한부모 추가공제 적용에 관한 자료
<신 설>	우. (현행 “누”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	
연 락 처	(044) 202 - 3632